

# 투 고 규 정

## 제1장 발간

### 제1조(발행 회수와 발행일)

본 규정은 4회 발행한다.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자연치유재활복지융합연구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투고분야 및 내용)

자연치유재활복지융합연구지 투고 논문은 예술, 인문, 사회 및 과학기술, 자연치유, 재활복지 학술 및 연구 활동에 의해 산출된 결과임과 동시에 학문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연구 결과이어야 한다.

### 제4조(투고윤리)

투고 논문은 본 논문지에 투고되기 이전에 국내외 학술지, 논문집 및 기타 정기 간행물에 투고 및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원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윤리규정에 따라 저자들이 진다. 그리고 인간 대상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편집 체계)

1. 원고는 게재논문 작성요령에 맞추어 한글(HWP)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저자명, 소속기관, 제출자의 연락처(주소, 전화, e-mail 등)를 포함한 '원저 파일'과,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심사용 파일'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3. 본문은 함초롬바탕 10pt로 작성하고, 줄간격은 160~170%로 한다
4. 국문초록은 약 900~1,200자(10~12줄 이내) 영문초록은 약 200단어(180~220 words)로 작성하며, 각각 5개의 주제어를 포함한다
5. 그림이나 표의 작성은 그림 제목과 표 제목은 영어로 작성하고, 표의 데이터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통일해서 작성한다.
6. 본문은 1단 편집을 원칙으로 한다.
7. 논문 투고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재활복지연구소로 하며, 저널 보기는 논문집 (<https://www.dongbang.ac.kr/html/laboratory04/sub01.php>)에서 이루어진다. 논문 접수는 논문투고 (<http://jnhsb.dongbang.ac.kr>)로 회원가입을 한 뒤 이루어지며 투고본, 논문투고서, 논문유사도검사 상세보기결과를 첨부하여 이루어진다. 접수 문의를 위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문의처 : 02-3668-9863)
8. 석박사학위논문 요약본 또는 재구성논문인 경우에는 논문 제목에 각주를 달아 학위논문의 일부임을 표기해야한다.
9. 학회지 표기 및 DOI
  - 1) 본 학회지의 영문 권·호 표기는 Vol. ○, No. ○ (Year) 형식을 따른다.
  - 2) 쪽수는 최종 인쇄본 기준으로 표기하며, 편집 중에는 pp.

X-XX로 임시 표기할 수 있다.

- 3) DOI는 논문별 고유 식별자로서 확정된 값만을 사용하며, 논문 첫 페이지에 “DOI:”로 표기한다.

[예시] DOI: <https://doi.org/10.59181/jnh.2025.22.###>

- 4) 참고문헌에서는 DOI 라벨(DOI:)을 사용하지 않고, URL 형식으로 기재한다.

## 제6조 원고작성 규정

1. 논문구성은 한글 제목, 한글 저자, 영문 제목, 영문저자(소속과 직책), 한글 요약, 한글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핵심어(Keywords),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한다.

- 1) 한글 제목
- 2) 한글 저자(소속과 직책)
- 3) 영문 제목
- 4) 영문저자(소속과 직책)
- 5) 한글 요약 및 주제어(국문)
- 6) 서론
- 7) 연구방법
- 8) 결과
- 9) 결론 및 제언
- 10) 참고문헌
- 11) Abstract 및 Keywords (영문)

최종본 논문투고 시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며, 저자가 1인일 경우에는 제1저자가 교신저자가 되지만,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교신저자를 선정하여 표기하되, 교신저자의 전자메일 주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초록의 구성

- 1) 모든 논문은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은 필수로 제출해야하

며 초록에는 연구의 목적(Objective), 방법(Methods), 결과(Results)와 논의/결론(Conclusion)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다만, 연구의 국제적 확산 및 학술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언어(중국어·일본어 등) 초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제3언어 초록의 게재 여부는 저자 요구 시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 3. 제목·저자 표기 및 주석

- 1) 논문 첫 페이지에는 국문 제목과 국문 저자명, 영문 제목과 영문 저자명을 순서대로 제시한다.
- 2) 저자명 옆에는 소속기관과 직위(또는 학위과정)를 병기할 수 있다.
- 3) 저자의 전자우편 주소(E-mail), DOI, 투고일·심사일·게재 확정일은 논문 첫 페이지의 주석(각주)으로 표기한다.

[예시] Kim Mi-jung, E-mail: kmj5044@naver.com

DOI: <https://doi.org/10.59181/jnh.2025.22.##>

투고일: 2025. 11. 16. / 심사일: 2025. 12. 12. /

게재확정일: 2025. 12. 21.

- 4) 주석에는 임시값을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확정된 정보만을 기재한다.

### 4. 그림 및 표 작성

- 1)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가능한 영어로 작성하되, 부득이하게 한글로 작성할 수 있다.
- 2) 표 및 그림 제목의 번호는 본문에서 설명을 할 경우 [Table 1], [Fig 1]로 표기한다.
- 3) 모든 표는 원칙적으로 가로 선으로만 작성한다.
- 4)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 5. 참고문헌

- 1) 참고문헌 작성양식은 APA 7th Edition 기준을 따르며, 본

문에서 참고문헌은 해당 부위에 [1]의 번호로 표기한다.

- 2) 참고문헌은 본문인용 순서대로 기재하며,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은 국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은 원문 표기(영문)를 원칙으로 한다.
- 3) 저자의 이름은 모든 저자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 ○ 외 ○명’과 같은 약식 표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참고문헌의 DOI는 URL 형식으로 기재한다.

[1] Journal Article 저널 논문인 경우

예) 김00. (2023). 자연치유 명상 프로그램이 노인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연치유재활복지융합연구, 18(3), 55-72. <https://doi.org/10.xxxx/xxxxx>

예) Kabat-Zinn, J., & Santorelli, S. (2014).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0(2), 97-109. <https://doi.org/10.xxxx/xxxxx>

[2] Book 서적

예) G. D. Hong (1995). Exercise physiology. Seoul: Dongyang Publishing.

예) M. J. Safrit, M. J. (1990). Introduction to measurement in physical education and exercise science. Louis, MO: Times Mirror.

[3] Chapter in a Book 서적의 장을 인용한 경우

예) H. V. Jansen. N. R. Tas and J. W., Berenschot (2004). in Encyclopedia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Edited H. S. Nalwa, American Scientific Publishers, Los Angeles, Vol. 5, pp.163-275.

[4] Conference Proceedings 학술대회 논문인 경우

예) J. Kimura and H. Shibasaki, Editors (1995). Recent Advances in Clinical Neurophysiology. Proceedings of the 10th International Congress of EMG and Clinical

Neurophysiology, October 15–19; Kyoto, Japan.

[5] Patent 특허인 경우

예) C. E. Larsen, R. Trip, and C.R. Johnson (2011). Methods for procedures related to the electrophysiology of the heart. U.S. Patent 5,529,067, Jun 25.

[6] Web Page 인터넷 홈 페이지인 경우

예) <http://freeant.sitecook.kr/papers/>, Jun 25, 2012.

[7] 학위 논문

학위논문 중 석사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분야에서 학술논문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의 판단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예) S. O. Park (2012). Effects of Forest Experience Program on Relief of Menopausal Psychological Symptoms in Middle-age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geuk University, Seoul, Korea.

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석사학위논문

O. S. Kim (2012). Effects of Forest Experience Program on Relief of Menopausal Psychological Symptoms in Middle-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geuk University, Seoul, Korea.

[8] (인용 번호) 심사용 논문의 인용번호는 순서대로 [ ] 안에 기입한다. 단독으로 인용되는 문헌은 [1] [2]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기입하며, 3개 이상의 문헌이 연속적으로 인용되는 경우에는 [3–5] 등과 같이 기입한다. 두 경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6][7–10] 혹은 [11][12–14][19] 등과 같이 기입한다.

6. 연구윤리 및 IRB 승인

- 1) 투고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Guideline과 교육부에서 발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최신 개정본을 참고한다.

- 2) 논문윤리검사는 10% 내외를 기준으로 하며 투고논문은 연구의 제안, 수행, 발표과정에서 내용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 3)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IRB 승인 대상 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승인 번호를 논문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4) 설문조사 연구, 인터뷰·면담·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등 질적 연구, 프로그램 중재 및 실험 연구, 개인식별이 가능한 자료를 활용한 통계·2차 분석 연구는 모두 IRB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 5) 문헌고찰,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연구, 이론 연구, 개념 연구, 법·제도·정책 분석 연구, 공개된 2차 자료만을 활용하며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연구 등은 IRB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7. 전자 투고

서면 심사의뢰는 허용되지 않으며, 투고 논문은 투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8. 투고 면수

- 1) 심사용 논문의 투고 면수는 제한이 없지만, 게재용 논문 최종본은 최소 15면(원고 12쪽, 참고문헌 2쪽, 영문초록 1쪽), 최대 35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20면 이상일 경우 본인 부담금액이 있다. 초과 면수 1면당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하며 10,000원씩의 초과 게재료를 투고자가 납부해야 한다.
- 2)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경우 10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재직기관 지원의 경우 제외)하고 논문제목에 각주를 달아 지원관계를 표기한다.

- 3)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한 후 수령할 수 있다(10부 30,000원).

## 제7조 심사용 논문 투고양식

- 1) 심사용 논문은 가능하면 자연치유연구 양식에 알맞게 투고한다. 게재가 확정될 때는 자연치유연구 양식에 맞게 정리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2) 투고 시 원저 파일은 저자의 정보를 기재해서 투고하고, 심사용은 블라인드 채점이므로 저자의 정보를 삭제하고 투고한다.

## 제8조(저작권 양도)

논문 저자는 등록된 논문을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한다. 게재용 논문 최종본이 도착한 시점부터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로 위임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9조(교신저자)

투고 논문과 관련된 모든 연락은 교신저자의 연락처(E-mail, 우편, 전화, 기타 연락처)를 통해 이루어지며, 연락이 일정 기간 두절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의뢰 및 채택)

1. 심사는 연구의 의의, 선행연구 탐색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결과제시 및 해석의 정확성, 논의의 적절성, 초록의 포괄성과 논문형식에 근거하여 ‘게재가’,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2. 논문의 심사의뢰, 심사진행, 채택여부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논문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은 가능하면 1회로 하되, 최대 2회로 한정하며, 3회 이상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이 필요한 논문은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수정 후 재투고하도록 한다. 논문의 최종 채택 혹은 탈락 판정은 심사점수를 확인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세부사항은 논문심사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3. 투고용 논문에 저자 정보가 표시된 경우, 편집위원장 혹은 담당 편집위원은 저자들의 소속기관을 확인하여 같은 소속기관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이 할당되지 않도록 한다. 만일 투고용 논문에 저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 혹은 담당 편집위원은 저자 정보를 확인하여 심사위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